

2025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공고

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2025년도 「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학술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2월 12일
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

I. 사업목적

- 생명윤리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생명윤리 정보를 창출·확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연구자 간 지식·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도모
- 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 및 연구 활성화 제고

II. 사업내용

- 지원 자격
 - 학회: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중 생명윤리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로 진행하려는 경우
 - 학회 외 학술단체: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 생명윤리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하려는 경우
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의과대학·치과대학·한 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·치의학전문대학원·한의학전문대학원·간호대학의 부속병원에 소속된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술기관,
 - 그 외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법인
- 지원 대상 : 2025년 5월 ~ 12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학술단체
- 지원 규모 : 총 5건, 각 2,000,000원 지원

III. 신청 및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2. 12. (수) ~ 3. 31.(월)까지
- 접수방법 : 신청서 파일을 전자메일(policy-research@nibp.kr)로 접수
- 제출서류 :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 사업 신청서(소정 양식) 1부
- 문의처 :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 (02-737-8451)

IV. 심사기준

항목	지표	배점
신청기관 역량 (25)	학술단체의 역량 - 학회: 최근 2년 학술지 발행 및 학술대회 개최 실적 - 학회 외 학술단체: 최근 2년 생명윤리 관련 학술행사 수행 실적	25
개최 계획의 적절성 (50)	학술대회 개최 계획의 적절성 - 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, 발표·토론자의 전문성	20
	외부 학술단체와 공동개최 여부	10
	주제의 시의성 및 논의의 확장성	15
	예산 계획의 합리성	5
기회의 형평성 (5)	과거 지원 횟수 - 미 지원 5점 - 3회 이하 지원 3점 - 4회 이상 지원 1점	5
기대효과 (20)	학문 발전 및 학술교류에의 기여도	20
합 계		100
가산점 (5)	주제 및 학술대회 운영 관련 가산점 - '25년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을 고려한 제도 개선 관련 주제 또는 생명윤리 관련 정책적 시의성 및 우선순위 높은 주제로 개최 계획을 제출하거나, 개최 전·후 정책원과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경우, 심사 시 최대 5점 이내 추가 점수 부여	5

V. 선정 및 계약

1. 학술단체 선정 및 통보

- 심사단을 구성하여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평가로 학술단체 선정
- 선정된 학술단체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(4월 중)

2. 지원 계약 체결

- 지원금은 학술단체와 계약 체결 후 지급

- 계약 시 계약금의 70% 지급
-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수령 및 정산 후 잔금 30% 지급

3. 지원 시 참고사항

-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항목 : 인쇄비, 장소 사용료(웨비나 이용료), 발표자·토론자 수당
 - ※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지원금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범위에서 지급하여, 예산항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함
- 선정된 학술단체는 해당 학술대회 자료집, 현수막 등에 다음을 명시하여야 함
 - 후원 : (재)국가생명윤리정책원
 - 자료집에 “2025 정부재원(보건복지부)으로 (재)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지원금을 받았음”을 표기하고, ‘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’을 수록하여야 함
-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예산항목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학술대회 자료집, 현수막에 후원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- 해당 학술대회 진행사항 확인을 위해 학회 당일 학술대회 지원사업 관련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관련자 2인의 등록비는 면제하여야 함

VI. 결과 보고

1. 선정된 학술단체는 학술대회 개최 후 1개월 이내(단, 12월 학술대회 진행 시, 당해 연말 이내)에 다음을 제출하여야 함
 - 학술대회 개최 결과보고서
 - 학술대회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개최 세부내용, 경비 집행내역, 세션별 사진 등 증빙서류 포함
 - 학술대회 자료집 파일(전자파일 형태)
 - 지원금 청구서
 - ※ 잔금은 결과보고서 수령 후 지급, 지급 시기는 협의 가능(관련 정보 추후 제공)
2. 지원사업 공고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정에 따라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정책원 홈페이지(<http://www.nibp.kr>) 공지 사항 재확인 필요함